

46762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

Tel +70 8799 8306 Fax +82 70 8799 8319 http://www.krs.co.kr

36, Myeongji ocean city 9-ro, Gangseo-gu Busan 46762, Republic of Korea(Seoul)



담당자 : 김문경 (070-8799-8306, mkkim@krs.co.kr)

문서번호 : STS 6000- 808 -2020

일 자 : 2020.12.23.

수 신 : 내항선 선주사 및 관리사

참 조 : 국내지부

제 목 : 국내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변경 안내

1. 귀 사의 우리선급에 대한 관심과 후의에 감사드리며, 아울러 귀 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.

2.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(국내항해 선박)에 사용되는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관련 업무 수행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- 1) 황 함유량 기준 : 중유(0.5 % 이하), 경유(0.05 % 이하)
  - 2) 적용시점 : 2021.01.01. 이후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50조에 따른 중간검사(1종/2종)를 신청하는 날(검사착수일) 또는 2021.12.31.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
  - 3) 벌칙 : 부적합 연료유(고유황유)를 사용하거나 선박에 적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(「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」)
  - 4) 조치사항 : 상기 2)항의 적용 일자부터 기존의 고유황유(3.5%) 사용 및 선적 불가. 본선에 보관된 고유황유 육상으로 양륙 및 저유황유 수급 및 사용. 관련 사실을 검사원에게 확인 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재발급(증서 추록의 황 함유량 3.5% 란 삭제)
- \* EGCS를 사용하여 황 함유량 기준 이하로 황산화물의 배출을 감축하여 배출하는 경우는, 고유황유의 사용 및 선적이 가능 함.

한국선급 법령업무팀



[시행 2020. 12. 4.] [법률 제16699호, 2019. 12. 3., 타법개정]

해양수산부 (총괄, 법령개정사항-해양환경정책과) 044-200-5289, 5290

해양수산부 (선박규제-해사산업기술과) 044-200-5834, 5835

해양수산부 (해양오염방제 - 해양환경정책과) 044-200-5283, 5293

해양수산부 (해역이용협의를 - 해양보전과) 044-200-5305, 5306

**44 ( )** ① 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**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3. 24.>

1. **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·가동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**
2.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의 인근 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

② 삭제<2020. 3. 24.>

③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0. 3. 24.>

1.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
2. 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같은 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한 경우
3.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

④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일지를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1년간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.

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 있는 절차서(이하 "연료유전환절차서"라 한다)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.<신설 2011. 6. 15., 2020. 3. 24.>

**44 2( )** 선박의 소유자는 **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(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. 이하 제45조에서 같다)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.**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연료유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

[본조신설 2020. 3. 24.]

<제17110호, 2020. 3. 24.>

- 1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4조의2, 제48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2 (다른 법률의 개정)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부칙 제5조제5항 중 "제72조제4항"을 "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"으로 한다.
- 3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해양환경관리법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

[시행 2020. 12. 4.] [대통령령 제31212호, 2020. 12. 1., 타법개정]

해양수산부 (총괄, 법령개정사항-해양환경정책과) 044-200-5289, 5290

해양수산부 (해양오염방제 - 해양환경정책과) 044-200-5283, 5293

해양수산부 (해역이용협의 - 해양보전과) 044-200-5305, 5306

해양수산부 (해양보전관) 044-200-5303

해양수산부 (선박규제 - 해사산업기술과) 044-200-5834, 5835

**42 ( )**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9. 22., 2019. 7. 2.>

1. 경유의 황함유량은 0.5퍼센트(무게 퍼센트) 이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.05퍼센트(무게 퍼센트) 이하여야 한다.
2. 중유의 황함유량은 0.5퍼센트(무게 퍼센트) 이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"이란 연료유에 포함된 황의 함유량이 0.1퍼센트(무게 퍼센트)인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1. 9. 22., 2019. 7. 2.>

[시행일] 제42조제1항제2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

1.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: 2020년 1월 1일
2.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: 2021년 1월 1일

<제29948호, 2019. 7. 2.>

1 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며, 제4조, 제11조제2항, 제42조제2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: 2020년 1월 1일
2.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: 2021년 1월 1일

**2 (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에 관한 적용례)**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의 경우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법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나 법 제50조에 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날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한다.

**3 (기름저장시설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)** 별표 9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.

<제31212호, 2020. 12. 1.>(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)

1 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2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
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